

##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정 2011. 4. 26. 지침 제 3 호  
[시행 2012.12.13.] [지침 제8호, 2012.12.18., 일부개정]  
[시행 2014.9.3.] [지침 제11호, 2014.9.3., 일부개정]  
[시행 2016.3.31.] [지침 제16호, 2016.3.31.,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신설 2012.12.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개선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의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청렴옴부즈만”이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행 중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재단 외부인사 중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청렴지킴이”란 재단이 수행 중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재단 내부직원 중 선발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12.18.>]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제목개정 2012.12.18.]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2.12.18.>]

### 제2장 청렴옴부즈만 <신설 2012.12.18.>

**제4조(역할)**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다수인 관련 민원 등 민원사전에방활동 및 발생민원 중재

2. 민원사무와 관련된 시정권고·의견표명 및 관련사항의 감사요구
3.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관련제도 및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옴부즈만이 처리한 민원결과 및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6.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한 매 사업연도별 옴부즈만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8., 2016.3.31.>

② 옴부즈만은 도덕성, 청렴성이 높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18.>

1.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공기관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③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반부패 및 청렴도 업무 담당 부서장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성과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9.3.>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2.12.18.>

1. 감시 또는 평가 대상 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감시 또는 평가 대상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② 옴부즈만의 감시 또는 평가 등을 받는 직원은 옴부즈만에게 공정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반부패 및 청렴도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부패 및 청렴도 업무 담당 부서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3.31.>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활동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8.>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삭제 <2012.12.18.>

[제목개정 2012.12.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12.18.>]

**제9조(활동보고)** 옴부즈만은 매년 말 활동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안 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1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12.18.>]

**제10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2.12.18.>]

**제11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정보,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9.3]

### 제3장 청렴지킴이 및 반부패실무회의 <신설 2012.12.18.>

**제12조(청렴지킴이 역할)** 청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단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2. 부서 내 투명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감독
3. 업무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권고 및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한 매 사업연도별 청렴지킴이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9.3.]

**제13조(청렴지킴이 위촉 등)** 대표청렴지킴이를 포함한 청렴지킴이는 부서별 정·부로 나누어 2명으로 구성하되, 그에 대한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9.3.>

1. 정책임자는 근속년수 4년 이상 직원으로 한다(경력직원은 2년 이상).
2. 부책임자는 근속년수 2년 이상 직원으로 한다(경력직원은 2년 이상).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12.12.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9.3.>]

**제14조(임기 및 신분보장)** 청렴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성과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3.]

**제15조(반부패실무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부패실무회의(이하 이 조에서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8.>

1. 옴부즈만 및 청렴지킴이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고충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옴부즈만 및 청렴지킴이의 권고사항 등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관리
3. 그 밖에 옴부즈만 및 청렴지킴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회의는 옴부즈만과 청렴지킴이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8.>

③ 대표옴부즈만은 실무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8.>

④ 실무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18.>

[제목개정 2012.12.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12.18.>]

[제12조에서 이동 <2014.9.3.>]

## 제4장 보칙 <신설 2012.12.18.>

**제16조(기타)** 이사장은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기준 및 방안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4.9.3.>]

### 부칙 (제정)

이 지침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침 제8호, 2012.12.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침 제11호, 2014.9.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침 제16호, 2016.3.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